울신	나과	여	入]	月月	レユ
さん	. 0	H		7	i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86 호 2023. 2. 9.(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4회[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약수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5회[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6회[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7회[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8회[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및 지형도면 고시]·····
 8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99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비위면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207회[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5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218회[㈜두원공조 증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5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225회[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6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226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6**

안 하여 주 ○ 긴급한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24호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약수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약수어린이공원)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약수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9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조서

도면 표시	공원명	시설의	위치	r,	면 적(m²)	)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000	종 류	ΤΙ ^1	기정	변경	변경후	시 <u>구</u> 교 교 교	2175
361	약수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북구 중산동 1312-1 일원	3,341	증)89	3,430	'10.10.28 울(북)고83호	

###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총괄조서

_	분	공원면적	시 설 률		건 펴	율	ып
	正	(m²)	시설면적(m²)	비율	건축면적(m²)	비율	n 17.
당	초	3,341	1,103.9	33.0	-	-	
변	경	3,430	1,185.3	34.6	-	-	

※ 시설율 : 60%이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1조)

※ 건폐율: 10%이하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별표24 제2호 자목)

공

# 나.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부지면적	건축규	·모(m²)	7.0	비고
		ТЕ		(m²)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미끄
	木	게	기정	3,341	-	-	-	100.0%
	총 계 		변경	3,430	-	-	-	100.0%
	 고위시선		기정	1,103.9	-	-	-	33.0%
	공원시설		변경	1,185.3	-	-	-	34.6%
		소 계	기정	652.9	-	-	-	19.5%
		고 계	변경	734.3	-	-	_	21.4%
	도로 및 도로	ГР	기정	220.9	-	-	-	6.6%
	광장	포 포	변경	296.3	_	-	_	8.6%
		가정 광 장		432	-	-	-	12.9%
		<b>7</b> 70	변경	438	-	-	_	12.8%
	<b>*</b>	양시설	기정	240	-	-	-	7.2%
	Ť	6시2	변경	240	-	-	_	7.0%
	유희시설		기정	211	-	-	-	6.3%
			변경	211	-	-	-	6.2%
	<u></u> 녹	지	기정	2,237.1	-	-	-	67.0%
	· · · · · · · · · · · · · · · · · · ·	^	변경	2,244.7	-	-	-	65.4%

# 다. 세부시설(변경) 조서

구	н	도면	и д в	ㅂ기면저/²\	건축규	·모(m²)	20	нга
	正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m²)	바닥면적	연면적	규모	비고
기정		총	계	3,341	-	-	-	
변경		총	계	3,430	-	-	_	증)89
기정		시	설 면 적	1,103.9	-	-	-	
변경		시	설 면 적	1,185.3	-	-	_	증)81.4
기정			소 계	652.9	-	-	-	
변경			소 계	734.3	_	_	_	증)81.4
기정		1	도 로	220.9	-	-	-	
변경	도로 및	1	도 로	296.3	-	_	_	증)75.4
기정	* 광장	2	열 린 광 장	285	-	-	-	
변경		2	열 린 광 장	291	-	-	_	증)6
기정		3	동 심 원	147	-	-	-	
변경		3	동 심 원	147	-	_	_	
기정			소 계	240	-	-	-	
변경	휴양		소 계	240	-	-	_	
기정	시설	4	솔방울쉼터	240	-	-	-	
변경		4	솔방울쉼터	240	-	-	_	
기정			소 계	211	-	-	-	
변경	유희		소 계	211	_	<u>-</u>	_	
기정	시설	5	모래놀이터	211	-	-	-	
변경		5	모래놀이터	211	_	_	_	
기정			녹 지	2,237.1	-	-	-	
변경			녹 지	2,244.7	-	-	_	증)7.6

# 라. 도로(변경) 조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시 점	종 점	비고
계	기정		합계		146.2	220.9				
711	변경		ᆸ게		196.5	296.3				
	기정	3	1	1.5	38.1	57.2	연결로	열린광장	동심원	
	변경	3	1	1.5	38.1	57.2	연결로	열린광장	동심원	
	기정	3	2	1.5	42.9	64.4	연결로	솔방울쉼터	솔방울쉼터	
	변경	3	2	1.5	42.9	64.4	연결로	솔방울쉼터	솔방울쉼터	
	기정	3	3	1.5	16.4	24.6	진입로	동측경계	동심원	
	변경	3	3	1.5	16.4	24.6	진입로	동측경계	동심원	
소로	기정	3	4	2.0	2.9	5.8	진입로	북측경계	열린광장	
	변경	3	4	2.0	2.9	5.8	진입로	북측경계	열린광장	
	기정	3	5	1.5	33.0	49.5	연결로	소로3-2	동심원	
	변경	3	5	1.5	28.6	42.9	연결로	소로3-6	동심원	
	기정	3	6	1.5	12.9	19.4	진입로	서측경계	소로3-5	
	변경	3	6	1.5	27.4	41.1	진입로	서측경계	소로3-2	
	신설	3	7	1.5	40.2	60.3	연결로	열린광장	소로3-6	

# 4.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북구 공원녹지과 및 도시과에 비치)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25호

# 공유수면 점용 · 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2. 8.

2. 점용·사용의 목적 : 흙막이 가시설 설치(H-BEAM + 어스앵커 천공)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26-3, 626-4, 626-7, 626-8, 626-9

4. 점용 · 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일시) 142m²

나. 기 간 : 2023. 2. 15. ~ 2024. 5. 31.

5. 점용 ·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법인명) : 롯데건설(주)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 246-1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26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9. 22.〉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법인 또는 기	관명 울산 북	구청 문화체육	과			
신청인	대표자(성명)	북구청정	<u>}</u>		생년월일(	성별)	
	주소	울산광역	시 북구 산업	로 1010	전화번호	05	2-241-7333
	·						
점용 · 사용	-허가 번호(협의	· 승인 연월일)	제2023-1호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67-	16번지 일원 공	유수면			
목적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운영					
총사업비				2	20,000천원		
준공내용		점용 · 사	용시설 면적				m²
		공유수면	점용·사용면	적		2,5	500 m <sup>2</sup>
공사기간		2023년	2월 4일	~	2023년	2월	6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확인을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조건 준수 등

2023년 2월 7일

# 울신광역시 북구청장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27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8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2. 8.

2. 점용·사용의 목적 : 공업용수 노후관 갱생 및 정비

3. 점용 · 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944-7번지 외 1개소

4. 점용 · 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일시: 93.00㎡
 계속: 57.00㎡

나. 기 간

1) 일시 : 2023. 2. 8. ~ 2023. 12. 31.

2) 계속 : 2024. 1. 1. ~ 2028. 5. 31(영구)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5층)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28호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0호(2021. 1. 2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284호(2022. 12. 1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된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9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의 명칭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 : 옥동~농소 간 도로 및 오토밸리로 조성 등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접 매곡, 경주지역 산업단지 개발에 비해 정주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족적 정주기반을 강화하기 위함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면적 (당초) 363,310㎡ (변경) 362,936.2㎡
- 4. 사업시행자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한영
- 5. 시행기간 : 2022. 4. 7. ~ 2025. 12. 31.
-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별첨]
-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052-241-7912)
-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 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시항 : 생략
-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25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천곡지구 용도지역 결정(<mark>변경</mark>) 조서

7 14		면 적 (m²)	)	구성비	w) —
구 분	기 정	변경	변경후	(%)	비고
합 계	363,310	감) 373.8	362,936.2	100.0	
주 거 지 역	305,066	-	305,066	84.0	
제2종일반주거지역	161,295	-	161,295	44.4	
제3종일반주거지역	106,281	-	106,281	29.3	
준주거지역	37,490	-	37,490	10.3	
자연녹지지역	58,244	감) 373.8	57,870.2	15.9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사유
		제2종일반 주거지역	161,295	200	
_	북구 천곡동 927-1번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106,281	250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반영한 합리적인
	일원	준주거지역	37,490	400~500	용도지역 관리를 위한 변경
		자연 녹지지역	57,870.2	100	

###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변경)

			합 계			1류			2류			3류	
7	'분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계	기 정	23	7,184 (1,150)	116,260 (33,583)	3	1,673 (80)	38,863 (1,723)	13	3,746 (1,070)	60,221 (31,860)	7	1,765	17,176
71	변 경	23	7,184 (1,150)	116,175.2 (33,498)	3	1,673 (80)	38,863.2 (1,723)	13	3,746 (1,070)	60,136 (31,775)	7	1,765	17,176
促足	기 정	1	1,070 (1,070)	31,860 (31,860)	-	-	-	1	1,070 (1,070)	31,860 (31,860)	-	ı	_
445	변 경	1	1,070 (1,070)	31,775 (31,775)	-	-	-	1	1,070 (1,070)	31,775 (31,775)	-	1	-
줖	기 정	9	3,451 (80)	64,477 (1,723)	3	1,673 (80)	38,863 (1,723)	2	640	11,621	4	1,138	13,993
27	변 경	9	3,451 (80)	64,477.2 (1,723)	3	1,673 (80)	38,863.2 (1,723)	2	640	11,621	4	1,138	13,993
샾로	기 정	13	2,663	19,923	_	_	_	10	2,036	16,740	3	627	3,183
272	변 경	13	2,663	19,923	-	_	-	10	2,036	16,740	3	627	3,183

주) ()는 구역 외 연장 및 면적

### 2) 도로 결정<mark>(변경)</mark>조서

	-			0/	•							
		규	모			اديم			N 0	7 4	<u> </u>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2	76	29~ 31	보조 간선 도로	1,070 (1,070)	79호광장	중1-120	일반 도로			
변경	대로	2	76	29~ 31	보조 간선 도로	1,070 (1,070)	79호광장	중1-12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83	22~ 25	집산 도로	668	대2-76	중1-38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84	22~ 23	집산 도로	357	중1-385	중1-38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85	20~ 24	집산 도로	648 (80)	대2-76	소1-105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385	24~ 27	집산 도로	648 (80)	대2-76	소1-10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574	18	집산 도로	425	중1-383	중1-38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575	18	집산 도로	215	중1-383	중2-574	일반 도로			

		규	足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del>용</del>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3	470	12	집산 도로	781	중1-383	중1-38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71	12	집산 도로	283	중3-470	소2-66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72	12	집산 도로	45	대2-76	중2-57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73	12	특수 도로	29	대2-76	소2-661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2	659	8	국지 도로	230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0	8	국지 도로	263	중1-383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1	8	국지 도로	297	중1-383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2	8	국지 도로	249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3	8	국지 도로	240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4	8	국지 도로	230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5	8	국지 도로	100	중1-384	소2-66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6	8	국지 도로	105	중1-384	소2-66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7	8	국지 도로	182	중1-384	중1-38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8	8	국지 도로	140	중1-384	소2-66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85	4	특수 도로	546	중1-384	중1-384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286	4	특수 도로	32	중1-384	103호 유수지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287	6	특수 도로	49	대2-76	중2-574	보행자 도로			

주 1 ) ( )는 구역 외 연장 및 면적

주 2 ) 대로2-76호선 구역외도로 반영 (대로2-76호선 폭원30m 미개설구간 개설)

주 3 ) 중로1-385호선 구역외도로 반영 (도시개발구역 ~ 관문길 도로구간 개설)

### ■ 도로 결정<mark>(변경)</mark>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2-76호선	•도로 폭원 일부 축소 - B=29~31m → 29~31m	• 학교시설과 중복되는 도로구간 변경
-	중로1-385호선	•도로 폭원 확대 - B=20~24m → 24~27m	• 가감속차로 공간 확보를 위한 도로 폭 변경

###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7,1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번호		61 -1		면 적(m²)	)	최 초	-11 -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	342	주차장	북구 천곡동 919번지 일원	1,276	-	1,276		
변경	343	주차장	북구 천곡동 935-1번지 일원	1,395	증) 4	1,399		
-	344	주차장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1,305	-	1,305		

### ■ 주차장 결정(<mark>변경)</mark>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43	주차장	• 주차장 면적증가 A=1,395㎡→1,399㎡	• 구적오차 정정

### 2. 공간시설

### 가. 공원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m²)		최 초	
구분	표시 번호	공원명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의 조 결정일	비고
-	174	근 린 공	근 권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10,960	-	10,960		
_	150	소공원	소공원	북구 천곡동 920번지 일원	1,500	_	1,500		
-	151	소공원	소공원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1,395	-	1,395		

### 나. 녹지 결정(변경)조서

7 H	도면	11 211	시설의	ما حا		면 적(m <sup>2</sup>	(1)	최 초	.ul =
구분 <b>표시</b> <b>번호</b>		시설명	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625	녹지	완 충 녹 지	북구 천곡동 914-1번지 일원	18,371	증) 710	19,081		
변경	626	녹지	경 관 녹 지	북구 천곡동 산147-5번지 일원	20,893	감) 672	20,221		

### ■ 녹지 결정<mark>(변경)</mark>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625	완 충 녹 지	● 녹지 면적 중가 A=18,371㎡ → 19,081㎡	• 구적오차 정정		
626	경 관 녹 지	• 녹지면적 감소 A=20,893㎡ → 20,221㎡	• 구적오차 정정		

### 3. 방재시설

### 가. 유수지 결정조서

<b>도면</b> 구분 <b>표</b> 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m²)			최 초	비고
十七	표기 번호	기결병	종 류	7 4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川工
_	103	유수지	저 류 시 설	북구 천곡동 900-3번지 일원	1,646	-	1,646		
-	104	유수지	저 류 시 설	북구 천곡동 536-2번지 일원	2,159	-	2,159		

2023. 2. 9.(목요일)

보

## □ 취락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1.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조서

#### ■ 취락지구<mark>(변경</mark>)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59	천곡지구	자연 취락지구	북구 천곡동 605 일원	_	165,640	' 00.3.10 울고33호	
변 경	59	천곡지구	자연 취락지구	북구 천곡동 605 일원	_	165,418	'00.3.10 울고33호	

### ■ 취락지구<mark>(변경)</mark>사유서

구 분	지 구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9	천곡지구	• 면적감소 - 감)222㎡ 165,640㎡ → 165,418㎡	• 천곡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에 따라 합 리적인 용도지구 관리를 위해 도시개발 구역 선형에 맞도록 용도지구 경계 조정

###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mark>변경</mark>)

도면 구분 표시		7 Od 11d	위 치		нэ		
구분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고
변경	277	천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천곡동 927-1번지 일원	363,310	감) 373.8	362,936.2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H		면 적 (m²)		구성비	, n) —
구 분	기 정	변경	변경후	(%)	비고
합 계	363,310	감) 373.8	362,936.2	100.0	
주 거 지 역	305,066	_	305,066	84.0	
제2종일반주거지역	161,295	_	161,295	44.4	
제3종일반주거지역	106,281	-	106,281	29.3	
준주거지역	37,490	_	37,490	10.3	
자연녹지지역	58,244	감) 373.8	57,870.2	15.9	

### ■ 용도지역별 <mark>(변경)</mark>사유서

도면	위 치	용도	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표시 번호	T (1	기 정	변 경	(m²)	중의판	<b>ंच</b> ८४(च.८४)/५म		
			제2종일반 주거지역	161,295	200			
_	북구 천곡동 927-1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106,281	250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반영한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한 변경		
	크 년					준주거지역 37,490 400~500		중도시작 선니를 위한 현경
			자연 녹지지역	57,870.2	1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교통시설

(가) 도로

### (1) 도로 총괄표<mark>(변경</mark>)

			합 계			1류			2류			3류	
1	'분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계	기 정	23	7,184 (1,150)	116,260 (33,583)	3	1,673 (80)	38,863 (1,723)	13	3,746 (1,070)	60,221 (31,860)	7	1,765	17,176
/1	변 경	23	7,184 (1,150)	116,175.2 (33,498)	3	1,673 (80)	38,863.2 (1,723)	13	3,746 (1,070)	60,136 (31,775)	7	1,765	17,176
-I)	기 정	1	1,070 (1,070)	31,860 (31,860)	_	-	_	1	1,070 (1,070)	31,860 (31,860)	_	ı	-
땨	변 경	1	1,070 (1,070)	31,775 (31,775)	_	_	_	1	1,070 (1,070)	31,775 (31,775)	_	I	_
줖	기 정	9	3,451 (80)	64,477 (1,723)	3	1,673 (80)	38,863 (1,723)	2	640	11,621	4	1,138	13,993
27	변 경	9	3,451 (80)	64,477.2 (1,723)	3	1,673 (80)	38,863.2 (1,723)	2	640	11,621	4	1,138	13,993
샾	기 정	13	2,663	19,923	-	_	_	10	2,036	16,740	3	627	3,183
025	변 경	13	2,663	19,923	_	_	_	10	2,036	16,740	3	627	3,183

주) ( )는 구역 외 연장 및 면적

### (2) 도로 결정<mark>(변경)</mark>조서

		7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2	76	29~ 31	보조 간선 도로	1,070 (1,070)	79호광장	중1-120	일반 도로			
변경	대로	2	76	29~ 31	보조 간선 도로	1,070 (1,070)	79호광장	중1-12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83	22~ 25	집산 도로	668	대2-76	중1-38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84	22~ 23	집산 도로	357	중1-385	중1-38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85	20~ 24	집산 도로	648 (80)	대2-76	소1-105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385	24~ 27	집산 도로	648 (80)	대2-76	소1-10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574	18	집산 도로	425	중1-383	중1-38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575	18	집산 도로	215	중1-383	중2-57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70	12	집산 도로	781	중1-383	중1-38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71	12	집산 도로	283	중3-470	소2-66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72	12	집산 도로	45	대2-76	중2-57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73	12	특수 도로	29	대2-76	소2-661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2	659	8	국지 도로	230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0	8	국지 도로	263	중1-383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1	8	국지 도로	297	중1-383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2	8	국지 도로	249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3	8	국지 도로	240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4	8	국지 도로	230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규	足									
구분	둥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del>용</del>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2	665	8	국지 도로	100	중1-384	소2-66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6	8	국지 도로	105	중1-384	소2-66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7	8	국지 도로	182	중1-384	중1-38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8	8	국지 도로	140	중1-384	소2-66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85	4	특수 도로	546	중1-384	중1-384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286	4	특수 도로	32	중1-384	103호 유수지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287	6	특수 도로	49	대2-76	중2-574	보행자 도로			

주) ( )는 구역 외 연장

## ■ 도로 결정(<mark>변경</mark>)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2-76호선	•도로 폭원 일부 축소 - B=29~31m → 29~31m	• 학교시설과 중복되는 도로구간 변경		
-	중로1-385호선	• 도로 폭원 확대 - B=20~24m → 24~27m	• 가감속차로 공간 확보를 위한 도로 폭 변경		

###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ما حا		면 적(m²)	최 초	り つ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	342	주차장	북구 천곡동 919번지 일원	1,276	-	1,276		
변경	343	주차장	북구 천곡동 935-1번지 일원	1,395	증) 4	1,399		
-	344	주차장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1,305	_	1,305		

### ■ 주차장 결정(<mark>변경</mark>)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43	주차장	• 주차장 면적증가 A=1,395㎡→1,399㎡	• 구적오차 정정

### 2) 공간시설

### (가) 공원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m²)		최 초	
구분	표시 번호	공원명	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_	174	근 린 공 원	근 린 공 원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10,960	-	10,960		
_	150	소공원	소공원	북구 천곡동 920번지 일원	1,500	_	1,500		
_	151	소공원	소공원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1,395	-	1,395		

### (나) 녹지 결정<mark>(변경)</mark>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m <sup>2</sup>	· )	최 초	비고
十七	표기 번호	기결병	종 류	71 1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미끄
변경	625	녹지	완 충 녹 지	북구 천곡동 914-1번지 일원	18,371	증) 710	19,081		
변경	626	녹지	경 관 녹 지	북구 천곡동 산147-5번지 일원	20,893	감) 672	20,221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625	완 충 녹 지	• 녹지 면적 증가 A=18,371㎡ → 19,081㎡	• 구적오차 정정
626	경 관 녹 지	● 녹지 면적 감소 A=20,893㎡ → 20,221㎡	• 구적오차 정정

### 3) 방재시설

### (가)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b>도면</b> <b>또시</b>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m	?)	최 초	비고
1 1	변호 변호	기결정	종 류	71 /1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山北
-	103	유수지	저 류 시 설	북구 천곡동 900-3번지 일원	1,646	-	1,646		
-	104	유수지	저 류 시 설	북구 천곡동 536-2번지 일원	2,159	-	2,159		

## □ 취락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1.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조서

### ■ 취락지구(<mark>변경</mark>)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59	천곡지구	자연 취락지구	북구 천곡동 605 일원	_	165,640	'00.3.10 울고33호	
변 경	59	천곡지구	자연 취락지구	북구 천곡동 605 일원	_	165,418	' 00.3.10 울고33호	

### ■ 취락지구(<mark>변경</mark>)사유서

구 분	지 구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9	천곡지구	• 면적감소 - 감)222㎡ 165,640㎡ → 165,418㎡	• 천곡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에 따라 합 리적인 용도지구 관리를 위해 도시개발 구역 선형에 맞도록 용도지구 경계 조정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 단독주택용지<mark>(변경</mark>)

	도면	가구	Ţ	면적(m²	)		획 지		_
구분	표시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²)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86,075	증)1	86,076	-	-	86,075 86,076	
기정	5B	5B		3,685		-	북구 천곡동 902번지 일원	3,68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6B	6B		3,796		-	북구 천곡동 904-8번지 일원	3,796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7B	7B		4,715		-	북구 천곡동 906-3번지 일원	4,71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8B	8B		6,273		-	북구 천곡동 637-1번지 일원	6,273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1B	11B		5,595		-	북구 천곡동 910-1번지 일원	5,59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2B	12B		4,841		-	북구 천곡동 913-1번지 일원	4,841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3B	13B		5,035		-	북구 천곡동 912-2번지 일원	5,03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4B	14B		5,035		-	북구 천곡동 916번지 일원	5,03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5B	15B		5,265		-	북구 천곡동 916-10번지 일원	5,26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변경	16B	16B	5,250	증)1	5,251	-	북구 천곡동 927-1번지 일원	5,250 5,251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7B	17B		5,707		-	북구 천곡동 914-1번지 일원	5,707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8B	18B		5,335		-	북구 천곡동 914-11번지 일원	5,33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9B	19B		2,143		3	북구 천곡동 914-8번지 일원	2,143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20B	20B		4,894		-	북구 천곡동 922-1번지 일원	4,894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21B	21B		4,842		-	북구 천곡동 928-1번지 일원	4,842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24B	24B		5,753		-	북구 천곡동 952-12번지 일원	5,753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25B	25B		3,207		-	북구 천곡동 947-2번지 일원	3,207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26B	26B		2,847		1	북구 천곡동 952-1번지 일원	2,847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27B	27B		1,857		1	북구 천곡동 946번지 일원	1,857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 ■ 공동주택용지(변경)

7.8	도면	가구		면적(㎡)	)		획 지		ul ¬
구분	표시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합	계	00 242	감)273	99 060			88,342	
변경	· 범	/1	00,342	石/213	00,009	_	_	88,069	
기정	1B	1B		25,487		-	북구 천곡동 산147-8번지 일원	25,487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กวบ	OOD	62.055	711070	60 500		북구 천곡동	62,85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변경	23B	23B	62,855	감)273	62,582	_	544-1번지 일원	62,582	지계획 확정

### ■ 준주거용지<mark>(변경</mark>)

7 H	도면	가구	1	면적(m²	)		획 지		w) —		
구분	표시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²)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22,039	감)144	21,895	-	_	22,039 21,895			
기정	9B	9B		6 026		1	북구 천곡동 906-2번지 일원	3,31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8/1/8	טפ	ЭБ	6,026		0,020			4	북구 천곡동 632번지 일원	2,711	지계획 확정
기정	28B	28B	5,711	증)2	5,713	_	북구 천곡동	5,711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변경	200	20D	3,711	6)2	3,713	_	942번지 일원	5,713	지계획 확정		
기정	29B	29B	6,429	증)1	6,430	2	북구 천곡동	6,429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변경	29D	29D	0,429	ुंग	0,430	۷	540번지 일원	6,430	지계획 확정		
7] 7]						1	북구 천곡동	1,669			
기정	200	200	2.072	71.11.47	2.726	1	537-1번지 일원	1,673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버권	30B	30B	3,873	감)147	3,726	3	북구 천곡동	2,204	지계획 확정		
변경						ა	536-10번지 일원	2,053			

### ■ 주차장(변경)

7.8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ul ¬
구분	표시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3,976	증)4	3,980	-	_	3,976 3,980	
기정	9B	9B	1,305			2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1,305	
기정	19B	19B		1,276		2	북구 천곡동 919번지 일원	1,276	
기정	29B	29B	1,395	증) 4	1,399	1	북구 천곡동 935-1번지 일원	1,399	

### ■ 공원

7 н	도면	가구	면적(m²)			획 지		ul –	
구분	표시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²)	비고
기정	합	계	13,855	-	13,855	-	-	13,855	
기정	3B	3B		10,960		-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10,960	
기정	9B	9B		1,395		3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1,395	
기정	19B	19B		1,500		1	북구 천곡동 920번지 일원	1,500	

### ■ 녹지(변경)

	도면	가구	1	면적(m	<u>'</u> )		획 지		
구분	표시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39,264	<b>ろ</b> )20	39,302			39,264	
변경	ម 	711	39,204	<del>8</del> /30	39,302	_	_	39,302	
기정 변경	2B	2B	20 803	71/679	20,221		북구 천곡동	20,893	
변경	20	20	20,093	197012	20,221	_	산147-5번지 일원	20,221	
기정 변경	10B	10B	16 005	<u>る</u> )605	16,700	_	북구 천곡동	16,095	
변경	100	100	10,033	9)000	10,700		914-1번지 일원	16,700	
기정 변경	26B	26B	1,346	증)82	1,428	2	북구 천곡동	1,346	
변경	200	200	1,340	<del>8</del> )02	1,420	۷	951-2번지 일원	1,428	
기정 변경	27B	27B	930	증)23	953	2	북구 천곡동	930	
변경	210	210	330	6 /23	900	۷	948-6번지 일원	953	

## ■ 유수지

7.19	도면	가구	1	면적(㎡	)		획 지		ul –
구분	표시 번호	H 75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²)	비고
합	-	계	3,805	-	3,805	-	-	3,805	
기정	4B	4B	1,646	-	1,646	-	북구 천곡동 900-2번지 일원	1,646	
기정	30B	30B	2,159	-	2,159	2	북구 천곡동 536-2번지 일원	2,159	

# ■ 기타용지(종교시설)

7 8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ען יי
구분	표시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	계	23,277	_	23,277	-	-	23,277	
기정	22B	22B	23,277	-	23,277	ı	북구 천곡동 927-7번지 일원	23,277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 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ul>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ul> <li>단독주택</li> <li>공동주택(아파트 제외)</li> <li>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li> <li>※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의 1층에 한하여 허용하되, 건축물 연면적 비율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li> </ul> </li> </ul>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60% 이하
	5B,6B,7 B,8B,11		용적률	• 200% 이하
	B,12B,13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 1m지정
-	B,14B,15 B,16B,17 B,18B,19 B-3,20B		높 이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21B,24B ,25B,26B -1,27B- 1		배 치	<ul> <li>거주자의 개성에 맞게 다양하게 배치하되 건축물의 형태에 변화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배치</li> <li>자연경관에 대한 조망성과 일조조건에 유리하도록 남향이나 양호한 경관이 조망되는 곳을 향하여 주택 전면부를 배치</li> </ul>
			형 태	<ul> <li>지붕은 산지 및 구릉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며, 지붕의 경사범위는 3/10 이상으로 권장</li> <li>담장 및 대문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한 경우 생울타리 등의 식재로 계획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권장한다.</li> </ul>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에 의함
			기 타	•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2) 공동주택용지(A)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불허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 5m지정, 소로이상 도로 2m지정
		높 이	• 25층 이하
		배치	• 통경·통풍축 확보 가능한 건축계획 수립 • 서측 산지변 공동주택 배치는 스카이라인 변화를 유도
_	1B	형 태	<ul> <li>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범위는 3/10 이상으로 권장</li> <li>옥탑 구조물과 지붕이 분리된 경사지붕은 지양하고, 입면디자인과 일체화된 경사지붕 디자인 권장 단, 평지붕으로 설치 할 경우 옥상 구조물을 계획하여 옥탑의 돌출을 최소화 유도</li> <li>지붕의 형태는 옥탑부분과 조화될 수 있게 적용하고, 인접단지와 의 높이, 형태, 재질 등이 통일된 이미지 형성</li> </ul>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에 의함
		기 타	•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2) 공동주택용지(B)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 5m지정
		높 이	• 30층 이하
	207	배치	• 통경·통풍축 확보 가능한 건축계획 수립 • 서측 산지변 공동주택 배치는 스카이라인 변화를 유도
-	23B	형 태	<ul> <li>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범위는 3/10 이상으로 권장</li> <li>옥탑 구조물과 지붕이 분리된 경사지붕은 지양하고, 입면디자인과 일체화된 경사지붕 디자인 권장 단, 평지붕으로 설치 할 경우 옥상 구조물을 계획하여 옥탑의 돌출을 최소화 유도</li> <li>지붕의 형태는 옥탑부분과 조화될 수 있게 적용하고, 인접단지와 의 높이, 형태, 재질 등이 통일된 이미지 형성</li> </ul>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에 의함
		기 타	•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3) 준주거용지(A)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 례] 에서 허용하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불허	<ul> <li>허용용도 이외의 시설</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4호의 제2종근 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28호의 장례식장</li> </ul>		
		건고	톄율	• 60% 이하		
		용?	적률	• 400%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 2m지정		
-	9B-1,9B-4		9B-1,9B-4		0]	• 7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가로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배치		
			쳥	태	<ul> <li>벽면에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외계단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li> <li>주변의 건물 지붕과 일체화 또는 연속적인 리듬감을 부여</li> <li>옥상설비는 벽면을 세우거나 지붕창 등에 의해 차폐</li> </ul>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에 의함		
		기	타	•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3) 준주거용지(B)

	E   /   0 /   (D)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 례」에서 허용하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	불허	<ul> <li>허용용도 이외의 시설</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4호의 제2종근 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28호의 장례식장</li> </ul>		
		건피	<b>태율</b>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0 0 D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 2m지정		
-	2 8 B , 29B-2, 3 0 B - 1 ,	노	0]	• 10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30B-3	배	치	• 가로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배치		
	ශි		태	<ul> <li>벽면에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외계단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li> <li>주변의 건물 지붕과 일체화 또는 연속적인 리듬감을 부여</li> <li>옥상설비는 벽면을 세우거나 지붕창 등에 의해 차폐</li> </ul>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에 의함			
		기	타	•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4) 주차장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_	9B-2, 19B-2, 29B-1	용도	<ul> <li>「주차장법」제 2조에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li> <li>단,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 2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운동시설(옥외 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에 한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 되어야 함 -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규정에 의한 부대시설</li> <li>허용용도외의 시설</li> <li>「주차장법」및 조례에 의함</li> <li>건축한계선: 중로이상 도로변 1~2m지정</li> <li>제2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준주거지역: 7~10층 이하</li> <li>"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li> </ul>

### 5) 종교시설

-,	9 亚小豆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불허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6」상 종교시설 - 부대시설은 종교시설의 부속용도 • 허용용도외의 시설
			폐율	• 60% 이하
		용적률 건축선		• 200% 이하
_	22B			•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 1m지정
		높	0	_
		배	치	-
		형	태	_
		색	채	_
		기	타	-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1	22B 북서측 및 북동측 및 남서측 및 남동측, 23B 북서측및 북동측 및 남서측 및 남동측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대로2-76호선, 중로 1-383호선, 중로 2-574호선, 중로 2-575호선,

### 2)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1	5B 서측, 6B 서측, 7B 서측, 8B 동측, 11B 남측, 12B 북측 및 서측, 13B 북측, 14B 동측 및 북측, 15B 북측 및 서측, 16B 북측 및 동측, 17B 서측 및 남측, 18B 남측, 19B-2 동측, 19B-3 동측 및 남측, 20B 서측 및 남측, 21B 남측 및 동측, 24B 북측 및 동측, 25B 북측 및 동측 및 서측, 26B-1 동측, 27B-1 동측 및 서측, 22B 동측 및 서측 및 남측 및 북측	건축한계선 1m 지정	중로 1-383호선 변, 중로 1-384호선 변, 중로 1-385호선 변, 중로 2-574호선 변, 중로 2-575호선 변, 중로 3-470호선 변, 중로 3-471호선 변, 중로 3-473호선 변
기정	1	1B 서측 및 남측 및 북측, 9B-1 서측 및 남측, 9B-2 남측, 9B-4 동측 및 남측, 28B 북측 및 서측 및 남측, 29B-1 북측 및 남측, 29B-2 동측 및 남측 및 북측, 30B-3 동측 및 남측 및 북측	건축한계선 2m 지정	대로 2-76호선 변 중로 1-383호선 변, 중로 1-384호선 변, 중로 1-385호선 변, 중로 2-574호선 변, 중로 3-472호선 변, 소로 3-285호선 변
기정	1	1B 동측, 23B 동측 및 서측 및 남측 및 북측	건축한계선 5m 지정	중로 1-383호선 변, 중로 1-384호선 변, 중로 1-385호선 변, 중로 2-574호선 변, 중로 2-575호선 변

<sup>※</sup> 그 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는 울산시 건축조례에 따른다.

### Ⅱ. 지 구 단 위 계 획 시 행 지 침

### 제1편 총 칙

#### 제1조(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지정된 「천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시행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침화 하는데 있으며, 또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 시행지침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지정된 「천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구성)

- ① 건축부문의 지침은 4개의 편으로 구성되며 제1편 총칙과 제4편 지구단위계획 운용부문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편 민간부문, 제3편 공공부문으로 각각해당 대지에 각각 적용한다.
- ② 지침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다.

#### 제4조(시행지침의 기본원칙)

- ①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및 관련조례상 의 규정을 따른다.
-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③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조례·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조례·지침에 따른다.
- ④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⑤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환지설계 등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한다.

#### 제5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2. "허용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 특정한 용도를 허용한 것을 말한다.
  - 3. "지정용도"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에서 특정한 용도만을 정한 것을 말한다.
  - 4.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서 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 6. "건축한계선"라 함은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지상부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 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지정된 선을 말한다.
  - 7. "건폐율"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 8.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 9.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 10.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 11. "강조색"이라 함은 건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의 10%미만을 차지하는 색으로 건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한가지 이상의 색을 말한다.
  - 12.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 진출입을 불허하는 구간을 말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다.
  - 13. "전면도로"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 제6조(도면표시방법)

본 지침과 관련하여 규제되는 사항에 대한 도면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도면기호	색번호	비고
	벽계		Color 10 (255,0,0)	-
지?	적선		Color 250 (51,51,51)	-
가구?	계획선		Color 10 (255,0,0)	굵은실선
획지?	계획선		Color 7 (0,0,0)	굵은실선
가구 및	가구번호	1B	Color 10 (255,0,0)	가구 중심에 기재
획지번호	획지번호	1	Color 5 (0,0,255)	획지 왼쪽 상단에 기재
	건폐율, 높이 등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건축물 최고 최대 용적률 높이/층수  건축물 건축물 최저 최대 건폐율 높이/층수	-	A 200 -m/5 60 -
	1.0m이격		Color 210	
건축한계선	2.0m이격		Color 170	170번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한계선 거리에 따라 색상별로 표시
	5.0m이격		Color 88	
차량출입	불허구간	⊢ × ⊢	Color 170 (0,0,255)	-

### 제2편 민간부문

### 제1장 획지(대지)에 관한 사항

제7조(획지(대지)의 분할 및 합병)

-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단위로 함
- ② 획지(대지)의 분할·합병은 입지여건 및 택지규모에 따라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 할 수 있다. 다만, 합병의 경우 연접한 2필지로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 제2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제8조(허용용도)

- ① 단독주택용지의 허용용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 ※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의 1층에 한하여 허용하되, 건축물 연면적 비율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② 공동주택용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허용용도로 한다.
- ③ 준주거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의 준주거지역 내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을 허용용도로 한다.
- ④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해당하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허용한다.

#### 제9조(불허용도)

- ① 각 용지별로 허용용도외의 시설의 입지는 제한한다.
- ② 준주거용지는「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28호의 장례식장은 입지를 불허한다.

### 제3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제10조(건폐율)

- ① 건축물의 건폐율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으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른다.
- ②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 단독주택용지 : 60% 이하

- 공동주택용지 : 50% 이하

- 준주거용지 : 60~70% 이하

- 주차장 : 「주차장법」및 조례에 의함

③ 도면표시방법 : 건폐율은 아래 표시 그림의 좌측 하단에 명기한다.

(예시) 건폐율 60% 이하

60%	

#### 제11조(용적률)

- ① 건축물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용적률을 초과 하여 건축할 수 없으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법규에 따른다.
- ②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 단독주택용지 : 200% 이하

- 공동주택용지 : 250% 이하

- 준주거용지 : 400~500% 이하

-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함

③ 도면표시방법 : 용적률은 아래 표시 그림의 좌측 상단에 명기한다.

(예시) 용적률 200% 이하

#### 제12조(건축물의 높이)

- ① 건축물의 최저 및 최고층수가 제한되어 있는 대지는 지정된 층수(지상층 말함)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공동주택용지 : 25~30층 이하
  - 준주거용지 : 7~10층 이하
  - 주차장 : 제2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준주거지역 7~10층 이하
- ② 각 건축물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교차로 및 간선도로변, 단지내부의 건물높이를 조화롭게 건축하여야 한다.
- ③ 도면표시방법 :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층수로 규제하며, 상한선의 경우 이를 아래 표시의 우측상부에, 하한선의 경우 이를 아래 표시의 우측 하부에 가각 명기한다.

(예시) 4층 이하 최저제한 없음

4층
-

#### 제4장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 제13조(건축물의 배치)

- ① 단독주택용지는 거주자의 개성에 맞게 다양하게 배치하되 건물의 형태에 변화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배치하도록 하며,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성과 일조조건에 유리하도록 남향이나 양호한 경관이 조망되는 곳을 향하여 주택 전면부를 배치하도록 한다.
- ② 공동주택용지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를 고려하여 통경·통풍축이 확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공동주택 건축물 사이의 공간에 밀폐감을 주지 않고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혼합 배치하되, 주변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 변화를 유도한다.
- ④ 준주거용지는 가로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 ⑤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및 관련조례상의 규정을 따른다.

#### 제14조(건축한계선)

- ① 중로이상 도로와 접하는 단독주택용지 도로변으로 1.0미터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② 중로이상 도로와 접하는 준주거용지변으로 2.0미터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③ 중로이상 도로와 접하는 공동주택용지변으로 5.0미터 건축한계선을 두어 오픈스페이

스를 확보하도록 한다.

④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에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녹지공간의 조성 및 볼라드, 벤치, 조형물, 자전거도로 등의 가로경관 조성에 필요한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한다.

### 제5장 건축물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①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지붕형태는 산지 및 구릉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며, 지붕의 경사범위는 3/10 이상을 권장한다.
  - 2. 외벽이 10cm이상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입면에 굴곡 또는 돌출형태의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 3. 조망차폐 및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외부 마감 및 색채에 통일감을 형성토록 한다.
- ② 공동주택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형태, 재질, 색채 등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하며, 통일감 있는 건축물 경관을 형성토록 한다.
  - 2. 1~4층의 저층부는 목재, 점토벽돌, 황토벽돌 등 자연재질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 3.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범위는 3/10이상으로 권장한다.
  - 4. 옥탑구조물과 지붕이 분리된 경사지붕은 지양하고, 입면디자인과 일체화된 경사지붕 디자인을 권장한다. 단,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구조물을 계획하여 옥탑의 돌출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한다.
  - 5. 지붕의 형태는 옥탑부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접단지와의 높이, 형태, 재질 등이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 ③ 준주거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시설의 성격과 가로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한다.
  - 2. 주변의 건물 지붕과 일체화 또는 연속적인 리듬감을 부여하고, 옥상설비는 벽면을 세우거나 지붕창 등에 의해 차폐 될 수 있도록 한다.
  - 3. 벽면에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외계단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제16조(건축물의 색채)

- ① 주거지역내 건축물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주조색은 화려하지 않은 색을 권장한다.
- ② 건축물의 외벽 색깔은 다음 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 등 색채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단독주택 건축물의 색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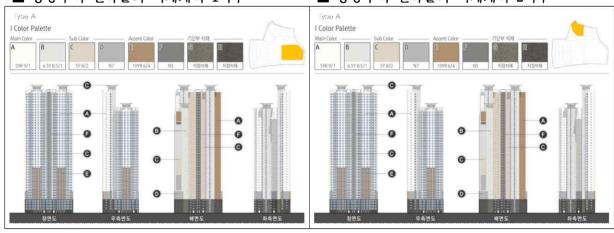


### ■ 준주거 건축물의 색채계획



### ■ 공동주택 건축물의 색채계획-1지구

### ■ 공동주택 건축물의 색채계획-2지구



#### 제17조(담장 및 대문)

- ① 단독주택용지의 담장 및 대문 설치는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물 타리 등의 식재로 계획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채 등은 본 건축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제18조(부설주차장)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및 설치기준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기준에 따른다.

### 제6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19조(대지내 공지)

- ① 건축선 등에 의하여 생겨난 공지는 녹지 및 화단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하되, 건축물 신축 시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주차출입구, 건물 진·출입구간이 설치되는 부분과 사면 발생 및 옹벽 설치 등의 지형적 이유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및 관련조례를 따른다.

### 제20조(대지내 조경)

- ① 대지내 조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1. 도로변 : 지하고가 높은 낙엽활엽 교목과 병충해 및 공해에 강한 교목을 식재한다.
  - 2. 공원·녹지 : 관상적 가치가 높은 화목류(수형·꽃·열매)와 경관성이 뛰어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으로 한다.
  - 3. 택지주변 : 지하고 및 녹음효과가 높은 낙엽활엽교목과 수관이 크고, 답압에 잘견디는 수목을 식재한다.
- ②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1.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2.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생울타리를 만들고, 배롱나무와 같은 녹음식재를 실시한다.
  - 3. 동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휴게공간 및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분하고 모래 판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포장할 수 있도록 한다.
  - 4.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

리하도록 설계한다.

③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및 관련조례를 따른다.

### 제7장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사항

### 제21조(옥외광고물)

- ① 옥외광고물은 광고물의 고유 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 ② 판류형 옥외광고물 설치를 지양하고, 입체형 옥외광고물 설치를 권장한다.
- ③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한 조례」등 관련 법규 및 조례를 따른다.

# 제3편 공공부문

# 제1장 도로시설물

### 제22조(자전거도로)

- 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시·종점부 유색(적색) 포장을 하도록 하며, 100m 간격 노면 표시 및 200m 간격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교차로의 경우 자전거 횡단로 설치(적색포장) 및 자전거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④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규 및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 제2장 교통시설물

### 제23조(버스정차대)

- ① 주보행동선과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 도로 연결부나 주요 공공시설 등 기타 교통시설과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장소에 설 치하여야 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교통량을 감안하여 가급적 중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되 이용 인구 집중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정차대는 교차로, 횡단보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버스정차대에는 각종 안내시설 및 가로시설물을 집합적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4조(과속방지시설)

- ① 교차로 부근, 특정건축물의 부지 출입구, 급경사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속도 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 ②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도로에 과속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주변도로, 기타 통행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 ③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밝은색으로 채색하도록 한다.

### 제25조(횡단보도)

- ① 횡단보도의 설치 위치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지점에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 교차로에서의 횡단보도는 가각부의 끝단에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하고 험프형 횡단보도로 설치한다.
- ② 횡단보도의 구조
  - 횡단보도의 폭은 도로의 위계에 따라 구분하여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는 6m내지 10m, 국지도로는 4m내지 6m로 한다.
- ③ 보도의 경계석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 제26조(교통신호등 설치기준)

① 설치기준은 교통영향평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 제3장 포 장

### 제27조(조성기준)

- ① 포장 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 ②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제28조(차도포장)

- ①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차혼용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서행운

전을 유도하고 보행특성에 따라 포장 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한다.

③ 보행 및 자전거도로와의 교차로접속구간 등 시인성 제고가 필요한 구간은 투수성콘 크리트, 소형고압블록 등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제29조(보도포장)

- ① 주요시설지 내 포장은 투수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투수콘포장 또는 자연재료를 이용한 포장으로 계획하여 상징적인 공간감을 부여한다.
- ② 횡단보도 주변에는 턱없는 경계석과 점자블록 설치한다.

### 제4장 도시안내 표지시설

### 제30조(안내체계 설치원칙)

- ① 광역, 주요시설, 주요가로 순으로 체계적인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도로표지는 도로표지 규칙에 의해 설치하되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과 통합설치 함으로서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제31조(일반기준)

- ① 표지판에 표기할 지명은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쉽게 인지되어야 한다.
- ② 명명체계의 우선순위는 직역, 시설, 가로, 단지 순으로 하고, 위계별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하나의 표지판에 표기해야 할 명칭이 중복될 경우 상위 위계순으로 표기하되 필요시 2개의 명칭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주행도중 연속된 안내가 되도록 지명도에 따라 우선순의를 설정하며 다음 표와 같이 명명한다.

구 분	표시내용	명명원칙
주요 지역	지역명칭, 대표장소, 지역소개	• 간선도로변, 주요 전면공지에 배치 • 거리 및 도시이름 표기
주요 시설	시설명, 주요지역명, 방향, 교통시설 환승법, 대표적 건물	<ul> <li>지명도가 높은 시설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교차로 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기</li> <li>공공 및 생활시설편익시설을 위한 안내뿐만 아니라 시각적 지표물을 활용・시설물의 2~3개 전방 교차로로부터 표기</li> </ul>
주요 가로	행선지명, 가로명, 방향	• 진행방향의 가로명을 표기하고 좌우측에 인접 단지명을 표기 • 방향 및 예고표지에는 진행방향과 교차방향의 노선번호표기하고 남북(홀수), 동서(짝수)가로에 일련번호를 부여
주요 단지	주차장위치, 단지방향, 지구내 가로망방향, 단지명(동네명)	<ul> <li>공공시설의 이용권, 개발밀도에 따라 단지명 부여</li> <li>동을 기본단위로 번호체계를 구성하되 단지별로 구분</li> <li>단지번호는 주출입구에서 시계방향으로 부여</li> </ul>

### 제32조(교통안전 표지판)

① 구조, 형상 : 도로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 ② 설치기준

- 1. 배치간격은 표지판의 인지도가 좋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동작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2. 규제, 지시표지는 구제와 지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각 각 설치하고 주의 표지는 위험지역 입구나 혹은 위험지점 이전에, 안내표지는 교차로 및 전방에 배치한다.
- 3. 교차로 부분과 교통량 집중지역에는 타 지역보다 배치간격을 줄이도록 한다.
- ③ 배치의 원칙
  - 1.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장애를 주는 도로의 부속시설은 그 위치와 규모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 2. 안전표지를 설치 시 도로변이나 접속도로로부터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3.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도로 부토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 도록 한다.

### 제33조(도로표지판)

- ① 구조, 형상 : 도로시설물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 ② 설치기준
  - 1. 운전자가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 2. 설치방향은 차량이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하되 도로의 형태에 따라 10도이내의 안쪽에 설치하며, 시각적 장애를 일으키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③ 표기방법
  - 1. 지역의 진행방향과 전방에서 교차할 도로의 노선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 2. 방향표지판은 원거리와 근거리의 2개 지명을 표기하고, 기존 교통안전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부착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 제34조(유도방향 안내판)

- ① 구조, 형상 : 운전자의 시선높이를 감안하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② 설치기준 : 주요 교차로 및 주요 건축물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방향을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절점 부근에 집중 배치한다.
- ③ 표시내용
  - 주요 목표지점명
  - 주요목표지점까지 거리
  - 가로명

### 제5장 공원 · 녹지

제35조(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관련법규에 따른다.

### 제36조(공원 · 녹지계획)

- ① 공원·녹지공간을 체계화하여 환경악영향 발생요인을 제거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한다.
- ② 야간 이용의 활용도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야간조명을 계획하도록 한다.
- ③ 안내 시설물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 ④ 포장재는 투수성 재료 및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⑤ 패턴은 과다한 패턴과 색채 사용을 지양하며, 지역성, 상징성을 부여하되, 주변 환경 과 조화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주변 녹지 및 기존 경관요소와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사용을 권장한다.

곳

### 제6장 가로식재 및 가로장치물

### 제37조(기준 및 식재방식)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

-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 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하고, 방향성을 갖도록 열식을 원칙으로 한다.
- 가로수 식재 후 수목보호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철재 지주대 또는 지주목을 설치한다.
- 구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가로구간의 기능과 성격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도 록 한다.

### 제38조(가로 장치물)

- ① 가로 장치물의 설치는 일관된 주제에 따라 가로장치물 배치유형을 도출하고 재료, 형태, 배치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② 도로성격에 따라 가로장치물 배치유형을 도출하고 재료, 형태, 배치장소, 등 통합 및 복합화 된 계획기준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도록 한다.
- ③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 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보행집분산 지점에 가로 장치물을 집중 배치하여 이용의 편의와 기능간 효용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④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및 관련조례를 따른다.

# 제7장 기타사항

### 제39조(출입구에 관한 사항)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 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경우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도록 한다.

# 제4편 지구단위계획 운용부문

곳

#### 제40조(지침의 적용)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구역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행위에 적용한다. 단, 기존 건축물은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행위에 적용하도록 하다.

#### 제41조(건축허가 및 심의)

- 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내용이 건축허가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중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해당부분 위치 표기
  - 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해당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임야도
  -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 6.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
- ③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한한다.

#### 제42조(지침의 조정)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여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 규제사항을 완화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설계상의 좋은 착상이 있는 경우로서 사전심의를 득할 경우

#### 제43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도시개발사업 준공전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며, 준공이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 ② 본 지침 시행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본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곳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99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비위면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비위면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 자치법규명을 다른 자치단체와 통일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치법규명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비위면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울산광역시 북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 한에 관한 규칙」
-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  $\to$  제1조의3제1호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3조, 제4조)
-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총무과

- 전화번호 : 052)241-7212, 팩스번호 : 052)241-7209

## 6.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비위면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비위면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비위면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한다.

제2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를 "경우로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재직중인"을 "재직 중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중 "구청장은"을 "인사위원회는"으로 하고, "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 구할 수 있다"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울산광역시 북구 비위공직자의
비위면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u>관한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	l은 <u>재직중</u>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
분을 회피하기 역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	함으로써 공직기강
을 확립하고 깨끗	한 공직사회를 구
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직 중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의워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 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제1조의2제1 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해당 ----- 「지방공 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제1조의3 제1호--------- 경우로 한정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 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 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 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재<u>직 중인</u> ---------- 해당 -----제2조에 따른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 ---

공

2023. 2. 9.(목요일)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 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u>구청</u> <u>장은</u>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u>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u> <u>에 요구할 수 있다.</u>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의견	성명/ 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207호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곳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9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46-16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 나. 명 칭: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청소년창작센터 및 여성행복맞춤센터 건립공사)

3. 사업규모

구 분	시설명	규 모	비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창작센터 및 여성행복맞춤센터	부지면적 4,249.4㎡, (당초) 연면적 1,700㎡ 정도 (변경) 연면적 1,789.1㎡	부지조성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5. 사업의 기간: 2022. 1. 20. ~ 2023.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지번 ·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붙임 명세서와 같음
-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052-241-8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또는수용할지장물의현황,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토지)

울산광 역시 북구 중산동 일원

일련번 호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지 적	편입면 적	지분		소 유 자				· 비고
호			70		( m²)	( m² )	시스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 계	1 0112
1	중산동	546	16	임	832.0	593.0		울산광역시 북구					
2	중산동	552	1	답	294.0	294.0		울산광역시 북구					
3	중산동	546	20	답	632.0	632.0		울산광역시 북구					
4	중산동	546	26	답	14.0	14.0		울산광역시 북구					
5	중산동	546	24	임	56.0	56.0		울산광역시 북구					
6	중산동	546	10	답	79.0	79.0		울산광역시 북구					
7	중산동	546	21	임	186.0	186.0		울산광역시 북구					
8	중산동	546	11	답	33.0	33.0		울산광역시 북구					
9	중산동	546	4	임	33.0	33.0		울산광역시 북구					
10	중산동	552	3	도	63.0	63.0		울산광역시 북구					
11	중산동	681	10	도	10.0	10.0		울산광역시 북구					
12	중산동	552	4	답	13.0	13.0		울산광역시 북구					
13	중산동	681	11	전	211.0	211.0		울산광역시 북구					
14	중산동	681	1	전	575.8	575.8		울산광역시 북구					
15	중산동	682	4	답	661.0	661.0		울산광역시 북구					
16	중산동	682	18	전	80.0	80.0		울산광역시 북구					
17	중산동	680	1	전	349.0	349.0		울산광역시 북구					
18	중산동	682	21	전	267.0	267.0		울산광역시 북구					
19	중산동	1166	38	잡	26.6	26.6		울산광역시 북구					
20	중산동	1166	39	제	73.0	73.0		국(건설부)					
				소계	4,488. 4	4,249. 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 - 218호

# ㈜ 두원공조 증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2. 7.(화) ~ 2023. 2. 10.(금)

2. 사업내용

### 업 내 역 사 가. 사 업 명 : 두원공조 울산공장 증축공사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나. 사업주체 : ㈜두원공조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다. 시 공 자 : ㈜대득건설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라. 설 계 자** : 종합건축사사무소 미가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마. 감 리 자** : 종합건축사사무소 미가 평균금액 바.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97-9번지 ○ 대지면적 : 6,571.00 ○ 연 면 적: 6.121.10 ○ 규 모: 지상2층 2동 ○ 세 대 수 : -○ 공사기간 : 2023.02.~2023.06. ○ 허 가 일 : 2019. 9. 23. ○ 착공신고수리일 : 2023. 2.(예정) ○ 공 사 비 : 4,427,500,000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4,000,000

굣

### 3. 안전점검 내용

####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항타 및 항발기	2	2,000,000	4,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계			4,000,000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3. 2. 7.(화) 1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3. 2. 10.(금) 11: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3. 2. 10.(금) 13: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야 합니다.

-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3. 2. 10.(금) 14:00까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 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 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3. 2. 13.(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41호(2021. 2. 26.) 우리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u>안전진단전문기</u> 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 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나. 심사기준: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이 평점 =평가점수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0점

<b>입찰가격</b>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
 합계	100점	онс оон—— с <sub>1</sub> .

-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 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 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9. 기타 유의사항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

곳

- 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1】

#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 □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o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 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0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328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등록명부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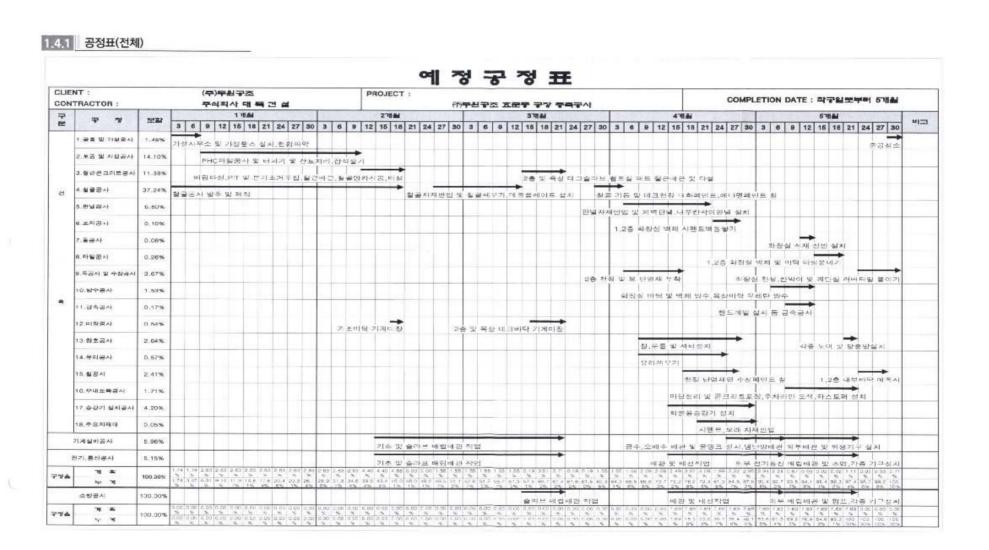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발주(인·허가 사항 포함)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명 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연번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분야	비고
1	㈜하이콘엔지니어링	신상훈	울산 제10호	건축	
2	㈜세명구조엔지니어링	강경원 외 1	울산 제5호	건축	
3	오름구조안전기술원(주)	박대준 정병찬	울산 제14호	건축ㆍ토목	
4	산업안전관리(주)	윤영만	제174호	종합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225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신청개요

가. 신 청 자 : 동남해안해상풍력㈜

나. 목 적 : 해상 시추조사(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비 지반조사)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내역

성 명	신 청 자 성 명 주 소		면 적 (m²)	목 적	설치하는 공 작 물	기간	비고
동남해안해 상풍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21층(서린동, 영풍빌딩)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북동 해상	1,293.19	해상 시추조사 (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비 지반조사)	-	허가일로 부터 3개월 (2023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2. 의견제출

가.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나. 제출기한 : 2023. 2. 10.(금) ~ 2022. 3. 2.(목)까지

다.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우편: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농수산과(연암동), FAX: 052-241-8059)

### 3. 기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 견 서

보

공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225호

성 명	신 청 자 주 소	장 소	면 적 (m²)	목 적	설치하는 공 작 물	기 간	비고
동남해안해 상풍력(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21층(서린동, 영풍빌딩)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북동 해상	1,293.19	해상 시추조사 (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비 지반조사)	-	허가일로 부터 3개월 (2023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의견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의견 제출인 주소:

전 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체적인 의견과 기타 증빙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공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226호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 구정발전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제안과 자문 역할을 추가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 나. 정책자문으로서 역할 확대(안 제1조, 안 제3조)

-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자문 추가

# 다. 위원회 정책자문 기능 강화(안 제4조)

-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사항
-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사항 등

# 라.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안 제5조, 안 제10조)

- '위원장 1명' → '공동위원장 2명'(구청장, 위촉직 위원장)

공

- 간사 : (당초)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 (변경) 기획예산과장
- 마. 해촉사항 신설(안 제7조제2항)
  - 품위 손상,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그 밖의 사유 등
-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0조
  -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을 설치·운영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 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 출 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과
  - 2) 전화번호: 052)241-7103, 팩스번호: 052)241-710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일부개정조 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3. 2. 9.(목요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을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자문,"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를 "울산광역시북구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을 "정책자문과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사항
- 2.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사항

- 3.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북구의회 의장이"를 "북구의회에서"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을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 2. 위원으로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제10조 중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를 "기획예산과장이 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 발전에 도</u>	제1조(목적) <u>구정의 주요정</u>
<u>움이 되는</u> 기반시설사업을 유치하거	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	<u> 자문,</u>
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	
록 <u>울산광역시</u>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울산광역시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발전을 위한 <u>기반시설사업</u> 유치활동	위한 <u>정책자문과 기반시설사업</u>
등을 위하여 <u>울산광역시 북구 지역</u>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
<u>발전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	<u> 자문위원회</u>
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u>위원회는 다음</u>	제4조(위원회의 기능) <u>위원회의 기능</u>
<u>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에 관한	1.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u>사항</u>	<u>관한 자문 사항</u>
2.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한	2.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분
<u>지원에 관한 사항</u>	<u>야에 관한 자문 사항</u>
	3.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u>3</u> . (생 략)	<u>4</u> . (현행 제3호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위</u>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u>공동위원장 2명</u>
여 4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 1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③ (생략)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 천하는 사람

2 ~ 3. (생략)

④ (생략)

제7조(위원의 임기) (생 략)

<신 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제10조(간사) ------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을 공동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 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 ③ (현행과 같음)
- 1. ----- 북구의회에서

2~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 2. 위원으로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기획 예산과장이 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 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